

보건복지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927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언어재활 관련 원격대학 등 현장실습과목 기준(별표 6의3 신설)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을 별도 정의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나. 원격대학 졸업생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개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졸업생 등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 및 총 시간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학·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7조의4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57조의4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격대학(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원격대학 등”이라 한다)의 현장실습과목에 대한 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 ④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한 것을 말한다.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로 하고,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 ▫ 발급 제1호나목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학·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 발급 제2호 중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학원·대학·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 발급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 등의 실습실 환경 기준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내 실습실을 보유하고 해당 실습실에서 별표 6의3의 개정규정 제1호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에 대한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원격대학 등의 경우에는 별표 6의3의 개정규정 제2호에 따른 실습실 환경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원격대학 등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표 6의3의 개정규정 제2호에 따른 실습실 환경의 기

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6의3]

언어재활 관련 원격대학 등 현장실습과목 기준(제57조의4제3항 관련)

1.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은 별표 6의2의 언어재활 관련 필수과목 중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과목을 의미한다.
2. 현장실습과목 운영기준

구분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지도교수 요건	가. 언어재활 관련 전임교원일 것 나.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 다. 임상 및 교육경력 5년 이상 * 위의 각 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도교수 대 실습생(학생) 비율	1 : 10 이하	
실습생 대 대상자 비율	1 : 1 * 임상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소지자 포함)가 수행하는 1 : 1 언어재활 활동을 관찰해야 함	1 : 1 * 실습생 1인은 이수 과목당 최소 1명 이상의 대상자와 언어진단 및 언어재활실습을 하여야 함 * 실습대상자는 원격대학 등에서 선정·섭외하며, 원격대학 등은 대상자 정보, 실습실 방문 기록 등 실습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함
실습실 환경	가. 언어재활현장에서의 실습(교내 이외 장소): 실습장소는 원격대학 등이 현장실습을 위해 업무협약 등을 통해 선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언어재활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실습장소는 원격대학 등에서 섭외하여 실습생을 배치하여야 함 나. 교내에서의 실습 1) 교내 실습실은 실습에 참여하는 사람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독립된 공간으로 운영, 사무 공간 등을 제외한 면적)하고, 실습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투명창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공간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p>을 설치할 것</p> <p>2) 교내 실습실에는 언어평가 도구, 언어치료 도구,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 등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과목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갖추는 것</p> <p>3) 실습대상자가 실습에 참여하는 동안 보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것</p>
실습과목 운영 및 관리	<p>가. 실습생은 실습에 대한 계획서 및 실시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는 이를 확인, 평가해야 함</p> <p>나. 실습과목에 대한 관리는 지도교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언어재활현장에서의 실습은 지도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상경력 5년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소지자 포함))이 수업을 관리해야 함</p>

※ 비고

1. 현장실습과목 기준 관련 자료는 원격대학 등이 관리하여야 한다.
2. 원격대학 등은 교내 실습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장비 목록 등 세부 현황자료를 원격대학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언어재활사 자격증 [] 발급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발급 14일, 재발급 5일
신청인	성 명	(한글) (한자)	사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해당사항만 기재합니다.

발급	응시번호	※ 합격증번호	합격연도
	출신학교		졸업일자
재발급	신청급수	[] 1급 [] 2급	자격증 번호
	신청사유		교 부 연월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언어재활관찰·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법 제72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2장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급 1. 언어재활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발 급
			수입인지 2,000원

※ 표는 본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 절 ----- 취 ----- 선 -----

자격증 [] 발급 재발급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자격종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
증명서 1부

3.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①·② (생략)

<신설>

<신설>

2. ----- 대학
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3. 4. (현행과 같음)

5. 제57조의4제4항에 따른 기준
을 충족하여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1부(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
서에 따른 원격대학(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원격대학 등'이라 한다)의 현장
실습과목에 대한 기준은 별표 6
의3과 같다.

④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
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
상 추가로 이수한 것을 말한다.